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915호(號) 1930년(昭和 5) 1월 23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2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0(昭和 5)년 1월 23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국선(局線) 내내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된장[味噌], 간장[醬油: 병조림을 제(除)함]의 항(項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품목(品目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급종별(扱種別)	임률(賃率)	기사(記事)
얼음[氷]	노량진(鷺梁津), 용산(龍山), 평양(平壤), 백마(白馬), 단동(安東), 선교리(船橋里), 신의주하급소(新義州荷扱所), 철원(鐵原), 서빙고(西氷庫)	대구(大邱), 마산(馬山), 진해(鎭海), 군산(群山)	차급(車扱)	2할(割)5푼(分) 감(減)	본(本) 임률(賃率)은 1930(昭和)년 3월 31일까지에 한(限)하여 적용(適用)함
	"	기타(其他) 각(各) 역(驛)		151마일(哩: mile) 이상 2할(割) 감(減)	